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코로나 19 관련 개인정보 이슈와 대응방안*

COVID-19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Issues and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rd Management

정지혜 (Ji-Hye Jeong)** , 나정호 (Jeong-Ho Na)***
장지혜 (Ji-Hye Jang)**** , 오호정 (Hyo-Jung Oh)*****

초 록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이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관점과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고,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 관리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수집 및 관리, 폐기의 기록의 생애주기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ABSTRACT

At a time when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recently faced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COVID-19," the view of actively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at odds with the view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s these social measures are coupled with the infringement of individuals' basic rights. In order to see the nation's response to the infectious disease crisis,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records according to crisis alert levels based on the manual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 Especially we analyzed the types and disclosure status of records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For detecting personal information-related issues on news media, we collected online news articles and performed text analysis. Through this, we reviewed the problems of record management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poin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ife cycle of records: collect, manage, and dispose of them.

키워드: 개인정보, 코로나19, 재난기록, 뉴스미디어, 이슈분석
personal information, COVID-19, disaster records, news media, issue analysis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8099507).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j-jye@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jhna2012@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wisejihye@jbnu.ac.kr)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기록관리학과 부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공동연구원
(ohj@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자: 2020년 12월 3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12월 15일
■ 정보관리학회지, 37(4), 81-107,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4.081>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팬데믹(Pandemic, 대유행)’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은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바이러스 뉴노멀’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면 국제기구와 보건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감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과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 환자 관리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 초기부터 전체 확진자의 수, 지역별 발생 현황,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이는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러한 투명한 정보공개 덕분이라는 평가¹⁾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 침해와 맞물리게 되면서 개인 사생활침해 문제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감염병 환자와 접촉자들의 신상과 동선 공개가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개인정보의 추적과 공개가 무조건적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권건보, 2020).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 위기에 따른 국가의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위기경보 단계별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을 살펴보고,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과 공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위기경계단계에 따라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민간에서 수집, 관리해야 할 개인정보 범위가 결정됨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로는 감염병을 비롯한 재난 상황 관련 기록에 관한 연구와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과 관련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태중(2020)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

1) TIME(2020.2.24). "How South Korea's Coronavirus Outbreak Got so Quickly out of Control."
<https://time.com/5789596/south-korea-coronavirus-outbreak/>

희정, 박태연, 오효정, 김용(2017)은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 유관기관들이 생산한 문서기록자료의 유형과 현황을 분석한 후, 기존 재난안전관련 기록정보자원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김현정(2017)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고 관리하는 OASIS 재난아카이브의 특성과 콘텐츠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재난에 대한 웹기록물 아카이빙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박태연, 오효정(2020)은 감염병의 사회적 확산에 따른 도서관계의 대응 활동 양상과 이용자들의 인식과 요구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뉴스 보도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동원(2012)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을 정보자본주의의 구조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개인정보의 해킹·유출이 정보자본주의의 내재적 논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도출하였다. 오주현, 강정환(2016)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연결망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개방성이 개인정보 확산을, 온·오프라인 관계의 중첩성이 개인정보의 조합을 촉진시킨다는 정보유출의 기제를 이론적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윤희, 유진호(2016)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언론에 보도된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분석하여 보안경제성 분석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존의 재난 상황 관련 기록은 재난이라는 위기상황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써, 주로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재

난안전 관련 웹기록물 현황을 분석하고 아카이빙하여 서비스하기 위한 연구들이 주를 이뤘다. 또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구들 역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예측,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설계, 보안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재난이라는 특수 상황을 대응함에 있어 기록물의 적극적인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상충된 입장의 접점을 기록관리 관점에서 찾아내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화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6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감염병예방법 제6조2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감염병예방법 제6조4항).

그러나 이처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헌법 제17조가 정하는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대한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맞추어 필요한 만큼만 국가 및 지자체가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질병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류하고, 이후 대

응 조치들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정종구, 손정구, 2020).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1항), 특히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

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개인정보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2항). 상기한 법 조항에 의해 수집·공개되는 정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유형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2.2 개인정보의 이해와 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표 1>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수집·공개되는 정보

법 조항	정보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제10조	감염병 발생 신고서: 수신자, <u>환자의 인적사항</u> , 감염병명, 발생정보, 신고의료기관 등 감염병 환자 등 사망(검안)신고서: 수신자, <u>환자의 인적사항</u> , 감염병명, 사망원인 등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 수신자, 의뢰기관, 감염병 원인 병원체명, 발생정보 등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u>인적사항</u> , 일시, 기관, 종류 및 제품 등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u>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전화번호·직업·감염병명·발병일 및 진단일</u>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지·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2조	1. <u>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u> 2. <u>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u> 3. <u>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u> 4. <u>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u>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6. 예방접종 후 <u>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u> 7.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8.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9.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3조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 예방접종대상자, 예방접종내용, 요양기관 등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4	<u>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u> ,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u>접촉자 현황</u> 등

이러한 개인정보는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등 사회의 구성, 유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오용·남용 또는 유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구제를 강화하여 국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이정념, 2020).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중대하고 위급한 공중위생 방역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공공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감염병예방법이 우선시 되며, 감염병예방법은 동법을 위반하여 정보를 처리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 제8항).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주고 있지만(제4조 제2호), 제36조 제1항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정보 수집의 대상자가 되는 확진자는 그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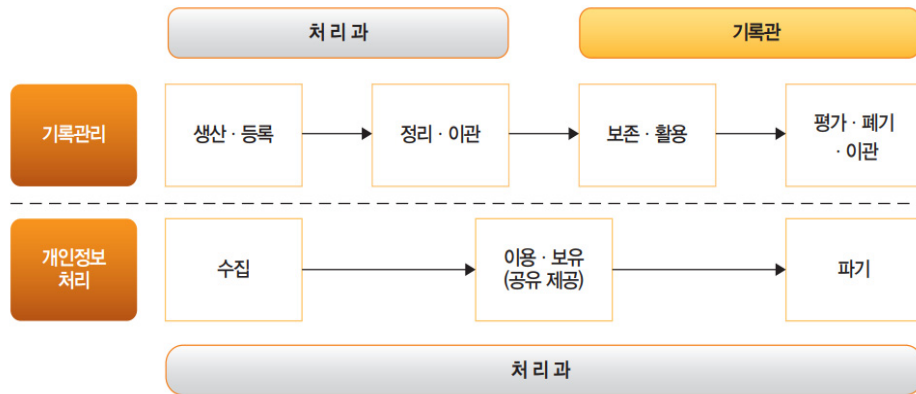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4조에 의

해 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모두를 처리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처리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 하에서는 예외 규정(감염병예방법 제24조의 3항, 제33조의 4)에 의해 이러한 제한이 허용된다. 더구나 감염병 상황에서는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안전에 관한 규정인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은 이러한 세세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역학 조사관의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고, 이미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제공되고 있음을 고지받을 뿐이다(이근욱, 2020).

2.3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지침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관리지침(공통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생산·관리 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관리 절차를 누락없이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미등록 및 무단파기 방지 등 체계적인 기록관리 절차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 지침을 발행했다.

해당 지침에서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기록물의 보존기간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평가 및 폐기가 수행되어야 하며, 공공기록물법의 관리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처리과 및 기록관 단계

출처: 행정안전부(2020), 기록물 관리지침(공통매뉴얼), p. 70.

〈표 2〉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

구분	내용	사례
유형 1	- 업무관리·전자문서시스템에 생산·등록된 기록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 전자문서의 본문 및 붙임파일에 포함된 개인정보
유형 2	- 행정정보시스템 보유 개인정보	- 인사관리시스템의 인사기록카드, 교육정보시스템의 학생생활기록부 등
유형 3	- 서면 신청, 홈페이지 등 기타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 홈페이지(회원신청, 전자접수) - 오프라인 서면신청 등

출처: 행정안전부(2020), 기록물 관리지침(공통매뉴얼)

기록물 관리지침에서 지정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유형은 〈표 2〉와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지침의 적용 대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기록물의 유형으로는 유형 1과 유형 3에 해당하는 기록물으로써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보존기간 만료 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3. 국내 감염병 관련 공공기록물 현황 분석

3.1 표준매뉴얼 기반 공공기록물 현황 파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반복된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감염병 유행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및 조직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된 표준매뉴얼에 기반하여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감염병 기록물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기간은 코로나19가 2019년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이후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다. 분석 대상 생산기관은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환자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질병관리청으로 한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기타 관계부처의 기록은 배제하였다.

3.1.1 위기경보 단계별 공공기록물 생산현황

우리나라는 감염병 유행이 발생하면 기준에 따라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게 된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을 근거로 감염병 재난에 대한 정부의 위기관리 목표와 방향, 의사결정체계, 위기경보 체계, 부처·기관의 책임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매뉴얼의 목적은 감염병예방

법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공중보건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범정부적 위기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 체계 및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것이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 단계별 선포 현황은 <표 3>과 같다.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특정 수산물 시장 관련 폐렴 환자 27명을 보고하였고 이후 새로운 감염병이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질병관리청은 1월 3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지정하였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주의’ 단계로 상향되었으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구성되었다. 1월 27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다시 상향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구성되어 정부의 전 부처가 협력 대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확진자 발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월 22일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되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구성되어 시스템 기반의 국내 확진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10월 현재까지 위기 단계 중 ‘심각(Red)’ 단계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 국내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선포 현황

단 계	시 기	비 고
관심(Blue)	2020.1.~2020.1.19.	2020.1.2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주의(Yellow)	2020.1.20.~2020.1.26.	2020.1.20. 13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경계(Orange)	2020.1.27.~2020.2.22.	2020.1.27.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심각(Red)	2020.2.23.~2020.10.31.(현재기준일)	2020.2.23. 위기경보 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

출처: 수원시, 『기초지방정부 수원시: 코로나19 대응 200일의 기록』, 2020.

서울시, 『서울시 코로나 백서 19』, 2020. 표 재구성

위기 단계별로 질병관리청에서 생산한 기록물 수량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홈페이지 (<https://www.open.go.kr/>)에 공시된 정보목록에서 문서제목을 토대로 '코로나19' 관련 검색어와 필터를 통해 추출하였다. 2020년 9월 12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정보목록에서 검색 시 기관명을 2020.1.1.~9.11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그 이후 2020.9.12~10.31 현재까지는 '질병관리청'으로 지정하여 검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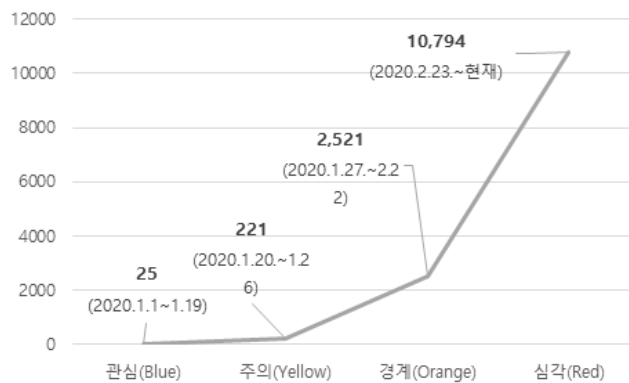
분석 결과, <그림 2>와 같이 '관심'부터 '주의' 단계의 기록은 짧은 기간과 비례하여 기록물의 생산량이 낮았고, '경계' 단계부터 '심각' 단계인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지표가 증가하고 환자의 수까지 증가하면서 기록물의

생산량도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위기경보 수준별 질병관리청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며 실제 생산된 기록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3.1.2 위기경보 단계별 기록물 특성 분석

1) 관심단계

관심단계는 코로나19의 발생이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 신종 감염병에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기이며 주요 임무 및 역할로는 예방중심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하며 인프라나 체계를 구축하거나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점검을 한다. 또한 방역 인프라 점검 및 가동준비 태세 점검으로 인해 질병관리청 감염병별 대책반이 운영되는 단계이다(<표 4> 참조).



<그림 2> 위기경보 단계별 기록물 생산량
(현재 기준일: 2020년 10월 31일)

<표 4> 질병관리청 '관심' 단계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	임무 및 역할	
관심 (Blue)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을 대비한 체계 점검 • 국가방역인프라 가동 준비태세 점검	• 국내외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 • 검역 강화 등을 통해 국내유입 사전 차단 • 이하 중략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9. 표 재구성

실제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에 대응 준비를 수행한 업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국내외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감시 강화와 관련된 국제검역상황 통제 및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관련 업무와 관련된 기록, 검역 강화 등을 통해 국내유입 사전 차단 역할과 관련된 기록이 주로 생산되었다. 관심단계에서 질병관리청의 업무에 따른 기록 생산량은 적었으며 이 시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도 생산되지 않았다.

2) 주의단계

주의단계는 국내 코로나19 사례가 첫 발생한 시기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6일까지인 초기 단계이다. 주요 업무는 코로나19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 및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지역사회 환자감시 및 감염관리를 강화하며 국민 감염 예방행동수칙을 배포하여 전염

병예방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는 단계로, 계속해서 위기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보고해야 하며 역학조사가 실시되고 현장 방역 조치가 이루어진다(<표 6> 참조).

이 단계에서 발생한 실제 기록들을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검역 강화 등을 통한 추가 유입 방지에 관련한 기록들이 각 지역에 위치한 ‘국립 검역소’와 ‘검역과’, ‘검역1,2과’를 포함하여 가장 많이 생산되었다. 주의단계부터 검역과, 국립검역소,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확진자, 접촉자와 관련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중간 기간인 1월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비상방역 운영계획이 실시되었으며 민원대응 및 국민소통 관리를 위해 ‘1339 콜센터’ 상담인원 증원에 관한 기록이 생산되었다.

3) 경계단계

보건복지부가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표 5> 질병관리청 ‘관심’ 단계 기록

부서명	단위과제명	기록 유형	건수(25)
검역1,2과	- 항공기 검역조사 - 국제검역상황 통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관련 업무협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능동감시	14
위기대응 생물테러총괄과	-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 역학조사관 제도 운영관리	-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발생관련 지침교육 및 지역사회 대응 협조	6
기타	중략		5

<표 6> 질병관리청 ‘주의’ 단계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	임무 및 역할	
주의 (Yellow)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강화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가동 • 이하 중략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9. 표 재구성

〈표 7〉 질병관리청 ‘주의’ 단계 기록

부서명	단위과제명	기록 유형	건수(221)
검역과 (검역1,2과)	- 선박검역조사 - 항공기 검역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자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66
국립검역소	- 선박검역조사 - 감염병관련 역학조사 업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자 파악을 위한 자료 요청	38
중앙방역 대책본부	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 통보	17
기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비상방역 운영계획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1339 콜센터’ 상담인력		100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청)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를 가동했다. 이 단계에는 확진자가 국내에 다수 발생함에 따라 역학조사와 방역 인프라가 더욱 강화되고 환자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표 8〉 참조).

경계단계에서 발생한 기록을 살펴보면 〈표 9〉와 같이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및 역학조사 업무에 관한 기록이 많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염병 진단관리과, 감염병총괄과, 검역과(1,2과 포함), 중앙대책본부 등에서 확진자, 의심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다량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유관기관 상호 협력과 관련한 기록과 감염병 지역 확산 대비를 위한 신규인력 교육과 관련한 기록이 생산되었다. 한편 역학조사와 검역조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비중이 높은 이 단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 보고’라는 제목으로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²⁾ 이후 코로나19 확진환자 뿐만 아니라 접촉자의 신상 담긴 문서도 함께 유출되어 개인정보유출 및 정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4) 심각단계

정부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

〈표 8〉 질병관리청 ‘경계’ 단계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	임무 및 역할
경계 (Orange)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강화 • 국가 방역 인프라 가동 강화, 필요시 추가 가용 자원 • 환자 조기발견 감시체계 강화 • 이하 중략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9. 표 재구성

2) 아시아경제(2020.01.31.) “XX동에 확진자 있다” 인터넷에 ‘신종 코로나’ 환자 정보 유포.
<http://www.asiae.co.kr/article/2020013107070578193>

〈표 9〉 질병관리청 ‘경계’ 단계 기록

부서명	단위과제명	기록 유형	건수(2,521)
감염병총괄과	사무업무	- UAE 보건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u>감염환자</u> 확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u>우리국민 7명</u> 격리	14
검역과, 1·2과 (지소 및 검역소)	- 국제검역상황 통계 - 사무업무 - 항공기 검역조사 - 감염병관련 역학조사업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u>자가격리(능동 감시)</u> 통보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에 따른 <u>정보제공 및 입국 수속 관련 업무협조요청</u>	2,019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u>접촉자 명단 송부</u>	260
기타		중략	228

상하여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이 단계는 국내 발생상황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감염병 환자 감시체계가 강화되는 단계이다. 모든 방역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방역요원, 의료인력 추가 동원으로 지속 가능한 운용 대책을 마련한다(〈표 10〉 참조). 이 단계가 현재까

지 유지되면서 많은 기록들을 생산하였고, 감염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과 의료진의 확보,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 정비에 대한 기록이 생산되었다.

심각단계에 생산된 실제 기록을 살펴보면 〈표 11〉과 같이 단계 격상 직후 2월 23일부터 항공

〈표 10〉 질병관리청 ‘심각’ 단계 임무 및 역할

위기경보 수준	임무 및 역할
심각 (Red)	•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지속 • 역학조사 실시 및 방역 등 현장 조치 - 고위험군 및 중환자 위주로 전환 • 저점병원 기능을 외래진료에서 입원 및 중환자

보건복지부,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2019. 표 재구성

〈표 11〉 질병관리청 ‘심각’ 단계 기록

부서명	단위과제명	기록 유형	건수(10,794)
감염병총괄과	- 사무업무 - 업무협조	- 코로나19 <u>격리입원 치료비</u> 지급 - 코로나19 <u>양성환자 정보제공</u> 요청	41
검역과, 1·2과 (지소 및 검역소)	- 감염병관련 역학조사 - 국제검역상황 통계 - 역학조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u>확진자 접촉자 명단</u> 요청 - 코로나19 <u>확진자</u> 관련 <u>기내 접촉자 조사</u> 협조 요청	7,344
중앙방역 대책본부	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	- 코로나바이러스-19 <u>확진자</u> 및 <u>격리대상자 명단</u> 송부 - 코로나19 <u>검사결과 수정 입력</u> 요청	1979
기타	중략		1,430

기 이동금지에 대한 기록이 대량 생산되었으며, 3월 22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관련 기록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누적 확진자가 2만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검역소 및 검역과에서 생산하는 전염병예방홍보, 검역관리, 역학조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었으며 그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이 총 5,827건³⁾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와 예산편성과 관련한 기록이 많이 생산되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심각 단계에 월별 기록물 생산량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4월과 여름 휴가철, 8·15기념식을 앞둔 7월에 코로나19 관련 기록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계단계와 마찬가지로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공무원의 코로나19 문서 유출⁴⁾과 관련한 사건이 또다시 보도되었다. 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의심환자와 관련한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사건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기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여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범위

및 삭제시기 준수 의무화 개인정보보호 등이 포함된 강화대책을 9월에 선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수기명부를 그대로 노출해 두고 있거나,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출입시키는 등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위기경보 선포 단계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공개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기록의 범위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수집해야 할 범위가 결정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지정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 뿐 아니라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3.2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현황 파악

본 절에서는 상기 분석된 기록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생산 현황과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 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메뉴에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다운받아 파악하였고, 질병관리청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항 공개 사항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중

<표 12> 심각(Red)단계의 기록물 생산량

월	2.23-2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건수	458	1,655	1,381	1,291	1,430	1,721	1,390	682	786	10,794

3) '유증상자' 1,869건, '확진자' 998건, '환자' 792건, '접촉자' 639건, '역학조사' 595건, '격리대상자' 395건(총 5827건)

4) 한라일보(2020.02.23). 서귀포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문서 유출.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582432973675544044>

합지원 포털(<https://www.privacy.go.kr/>)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메뉴를 통해 목록을 다운받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는 감염병대응과, 감염병백신 연구과를 포함하여 총 17개⁵⁾ 부서가 있으며 그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수집 및 생산하는 부서는 <표 13>과 같다.

검역 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들은 온라인 수집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항목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의 세부 사항은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직장주소, 집연락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주민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건강:필수, 기타(진단의사성명, 의사면허번호)가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세부사항은 이름:필수, 집주

소:필수, 기타(감염병 진료정보) 등 이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감염병 정책 총괄과에서 감염병 환자명부, 환자관리명부 등을 관리하고 있어 가장 많은 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수기 작성식 출입명부를 도입한 곳이 늘어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⁶⁾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늘어남에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QR코드를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였다. 이는 ‘역학조사를 위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시설출입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⁷⁾ 라는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표 13>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생산 부서 현황

부서명	담당업무	개인정보 파일 명칭	개인정보 항목	처리 방법	개인정보 보유수(건)
감염병 진단 관리 총괄과	- 코로나19 대응업무 - 민간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표본감시환자명부	- 정보주체 - 법정 대리인(14세 미만 보호자 등)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124,471
감염병 정책 총괄과	소독업관리, 감염병관리지원단 지원사업, 전수감시사업, 정보화총괄	감염병 환자 명부 환자관리명부			2,074,610
감염병 관리과	코로나19 유행예측 모델링 등	역학조사명부			91,192
검역 정책과	- 검역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검역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검역신청인정보, 의심환자정보		기타 (검역소 담당자에 의한 전산 등록)	247,336 157,706

출처: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www.kdca.go.kr/contents.es?mid=a20810030000>)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 5) 감염병대응과, 감염병백신연구과, 감염병정책총괄과,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고위험병원체분석과, 국립목포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급성바이러스연구과, 백신연구개발총괄과, 비축물자관리과, 신종병원체분석과,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위기대응총괄과, 유전체역학과, 인수공통감염연구과, 정보통계담당관, 진단분석과(질병관리청 홈페이지 <http://www.kdca.go.kr/> 조직도 참고)
- 6) 아시아경제(2020.09.04). “개인정보 유출 걱정돼요” ‘수기 출입명부’ 불안한 시민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0409580506141>
- 7) 영남일보(2020.05.23). 시설출입 QR코드 도입, 사생활 침해 논란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521010002946>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의 개인정보파일 보유 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르면, 보유기간을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로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하도록 한다.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암호화된 QR 및 출입기록 등은 코로나19의 잠복기(14일)의 두 배 기간인 4주(28일) 동안 저장·관리되며, 4주만 서버에 저장 및 자동 파기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며, 각 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해당 정보의 자동파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 요건과 수집, 이관 등의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단순히 보유 및 보관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에 적절한 파기 및 폐기 절차에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4. 뉴스미디어 기반 개인정보 유출 이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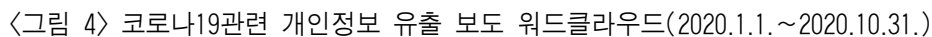
앞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감염병 관련 기록 중 상당수의 기록물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이며, 특히 위기 단계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등 민간영역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수집하는 범위가 늘어난 만큼 이에 대한 국민

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실정이다(정지혜, 오효정, 2020). 본 절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보도된 개인정보 관련 보도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기록물 관리 생애주기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1 뉴스미디어 수집 및 분석

분석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http://www.bigkinds.or.kr>)를 활용하였다. 검색 대상은 기사의 제목과 본문에 ‘코로나19’ 관련어와 ‘개인정보유출’ 관련어를 모두 포함한 기사로, 기간은 앞서 생산기록 분석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수집한 후 전처리 및 형태소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수집 결과 총 54개 언론사에서 발생한 845건의 기사들을 선별하였다.

〈그림 3〉과 같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틈타 정부기관의 재난 안전이나 방역을 사칭한 금융사기 관련 기사와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과 예방에 관련된 보도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을 넘어 ‘주의’ 단계로 넘어간 1월 말부터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에 대해 보도하였으며, 특히 특정 종교와 관련한 명단 공개와 관련한 기사로 인해 해당 기간의 보도건수가 가장 높았다. 이후 3월은 ‘코로나 환자 보고서 유출...성북구청 공무원 4명 검찰 송치’ 등 공무원의 공문서 유출 관련 이슈로 인한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5월부터 QR코드 방역관리



〈그림 4〉는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주요 이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키워드를 주요 시기별로 4 구간으로 나누어 시각화하였다. 첫 번째 그림은 처음 보도가 시작되기 시작한 시기인 1월 1

일부터 31일까지 워드클라우드이다. 확진자, 접촉자, 공문서, 가짜뉴스 등의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가짜뉴스에 대한 뉴스 보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기간 중 가장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두 번째 그림의 2,3월 이슈는 여전히 확진자와 관련한 보도가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공무원, 공문서, 내부 보고서, 유포자 등의 키워드를 통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동향에 대한 보도는 QR코드, 첨단위치정보, 동선파악 등의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출입관련솔루션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해당기간 동안의 보도 주요 이슈를 반영하는 네 번째 워드클라우드를 보면, 확진자, QR코드, 공무원, 경찰청, 공문서 등의 키워드를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키워드가 이슈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

본 절에서는 상기한 개인정보 유출 보도들을 기록관리 생애주기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4.2.1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문제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이용자는 먼저 체온을 측정하고 출입기록을 수기로 작성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목록 형태의 방문자 출입기록 대장이다. 목록 형태의 방문자 출입기록은 결혼식, 세미나, 제한구역 등에 기록을 작성할 때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확진자 식별 및 이동 경로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였다. 목록 형태 출입기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록에 작성되어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다. 방문자 누구나 개인정보를 작성하면서 이전에 누가 방문하였으며,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불특정 또는 특정한 누군가의 개인정보 1~2건 정도는 손쉽게 외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발생 후 <그림 5>와 같은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허위 개인정보를 기재⁸⁾하여 발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4.2.2 개인정보 공개 범위의 문제점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는 방역 당국이 관계있는 법인·개인 등에 감염병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등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공개하면 방역 목적을 벗어나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야기된다. 또한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가명처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연령·동선 등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기초로 온라인에서 호기심을 위한 스토리텔링과 판단, 조롱 등의 반응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8) 조선일보(2020.05.12). 코로나 비상...클럽, 공연장 입장 때 가짜 연락처 잡는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2/2020051201109.html?utm_source=bigkinds&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그림 5〉 출입명부 유출 피해 사례

뉴스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973>
<https://www.fnnews.com/news/202009211402045549>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환자에 대한 지나친 정보요구와 개인정보 공개는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유사증상 국민의 방역 참여를 꺼리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조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진 개인신원정보와 개인위치정보가 국가공무원을 통해 유출되는 사건(〈그림 6〉 참조)에서 볼 수 있듯이, IT 보안기술 발전만으로는 공무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출되는 문제는 막을 수 없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되는 개인정보에 비해 더욱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한 번 사이버 상에 유출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여 그에 따른 오남용의 피해를 수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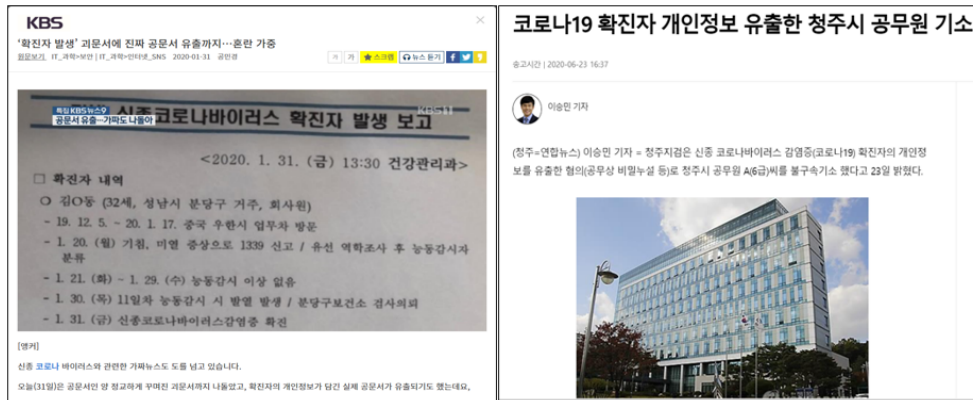
가영, 2020). 이로 인해 정보주체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으며,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켰다.⁹⁾

4.2.3 개인정보 폐기의 문제점

개인정보의 주체가 공유한 정보에 대해 제어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파괴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도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개인정보공유가 불가피하게 선행된 상황에서 공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제어는 물론 폐기 요청은 더더욱 불가능한 실정이다(〈그림 7〉 참조).

또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 상충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9) 동아일보(2020.08.12).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선고유예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812/102421712/1>



〈그림 6〉 개인정보 유출 문제점 사례

뉴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72834&ref=DA>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148300064?input=1195m>



〈그림 7〉 개인정보 폐기 문제점 사례

뉴스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G99CAH>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914010003208>

많이 포함된 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보존기간 최소화'의 원칙과 기록물평가 제도의 단위과제별 일괄 보존기간 책정이라는 원칙이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 개인정보 폐기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설문원, 2013).

5. 기록관리 관점에서의 고찰

5.1 감염병 관련 기록물 관리 방향성

규모가 큰 재난일수록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으로 남는다. 감염병 역시 사회재난 중 하

나로 2009년 WHO에서 처음으로 팬데믹 단계를 선언하고 국내에도 큰 유행을 일으킨 신종 플루를 시작으로, 이후 2015년의 메르스가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하였고, 현재는 코로나19가 전 인류의 사회적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4~5년 주기로 반복해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있어, 정부의 대응 결과와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화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사건을 기억하고 업무의 투명성 감시를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 나아가 보존된 기록은 또다시 비슷한 재난이 반복된 경우 보다 효율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 보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난의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면 동일한 경험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이 시도될 것이며, 여기에 재난으로서 감염병 기록물이 관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처럼 감염병 기록의 관리 및 공유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앞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및 기본권 이슈가 제기되는 등 정보 공개로 인해 야기된 폐단도 드러났다.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집한 개인정보 기반 감염병 대응에서의 성과도 크게 가시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동안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AI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신용카드 기록,

CCTV, 모바일 위치정보, 대중교통카드 기록 등 확진자에 대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다(조성은, 2020).

따라서 향후 새로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축적한 기록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분야까지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 관리 방안에 대한 협동이 필요하다. 특히 기록관리 관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라는 상반된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5.2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 관리 방안

질병관리청은 감염병환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⁰⁾고 밝혔다. 공공기관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조직원의 철저한 교육 및 유출사건의 책임에 따른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민간영역에서도 이를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관리 개선방안을 기록의 생애주기에 따라 <표 14>와 같이 수집, 관리, 폐기 단계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10) 질병관리청(2020).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https://nqs.cdc.go.kr/nqs/guide.do?gubun=privacy>

〈표 14〉 현황(문제점) 기반 개선방안

현황(문제점)		개선방안	대응주체
1. 포괄적인 지침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수집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모호	→	수집과정 방안	관 주도 민/관협동
2. 최대한의 개인기록이 포함된 정보 수집			
3.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의 유출 발생		관리과정 방안	민/관협동 관 주도 민/관협동
4.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 상충으로 인한 폐기의 어려움			
		폐기과정 방안	관 주도 민 협조

5.2.1 수집 단계

감염병예방법 내 법률상 수집과 관련된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위치정보를 무제한 수집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은 별도의 선별요건 및 이관, 폐기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기록물관리지침과 관련해 법의 적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집단계에서부터 현황과약을 위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감염병환자의 개인위치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강제처분 성격에 해당하므로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에 따라 수단이 적합한지, 법익의 균형성을 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명확한 수집근거와 수집의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황필규, 2016).

첫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도 그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향후 수집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도 법령에서 본인확인을 요구하거나 서비스 과정에서 본인특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분야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기본권 침해 이슈 대응을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수집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5.2.2 관리 단계

1)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의 비식별화
공공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령상 보관 필요성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

피한 경우에는 기존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문서에 개인정보 기재를 최소화하거나 개인정보를 추출하여 비식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일반적인 처리 기법으로는 예를 들면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하는 방법¹¹⁾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속성에 따른 암호화 알고리즘 구현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 구축 시 사용이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민간분야에서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 필요와 개인의 기본권 간의 비례성을 균형 있게 판단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경우 행정목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체계로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신영진, 2013). 이 제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적 준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사전 예방적 점검체계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분석·개선함으로써 침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공공과 민간영역을 망라한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상

기한 해외 선진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과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고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법적 준수사항에서 적용하여 적합한 기준을 도출하여야 한다.

3) 첨단 암호화 기법(Advances in Cryptography)도입

개인정보보호 전문 싱크탱크 조직인 FPF(Future of Privacy Forum)는 향후 10년 동안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이해를 위한 백서¹²⁾를 발간하였다. 그중 첨단 암호화 기법에 주목해보면 ① 자신의 정보 내용 자체를 전달하거나 노출시키지 않고도 자신이 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영지식 증명, ② 데이터를 해독할 필요 없이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에 대한 연산 및 분석 등을 수행함으로써 복호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제거할 수 있는 동형 암호화, ③ 암호화된 여러 데이터 소스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관심값(values of interest)을 계산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시스템 또는 기술인 다자간 계산, ④ 데이터 수집 과정부터 계산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데이터 세트에 통계적 “노이즈(noise)”를 추가하는 익명화 기술을 활용하는 차등 프라이버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주요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보호 시스템 및 도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11)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외 (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12) Privacy 2020: 10 Privacy Risks and 10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to Watch in the Next Decade.

5.2.3 폐기 단계

1) 폐기지침 및 폐기 등록부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폐기지침 및 폐기 등록부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기록물로 관리할 대상이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며, 보유기간 만료 후 즉시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보존기간 책정에 대한 재수립도 필요하다. 기존의 기록 관리 공공표준의 기록물 평가·폐기 절차의 절차와는 다르게 <그림 8>과 같이 간략한 절차로 진행하고, 단계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폐기된 기록물을 확인하기 쉽도록 폐기 등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민원처리 및 기록물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폐기 대행 체제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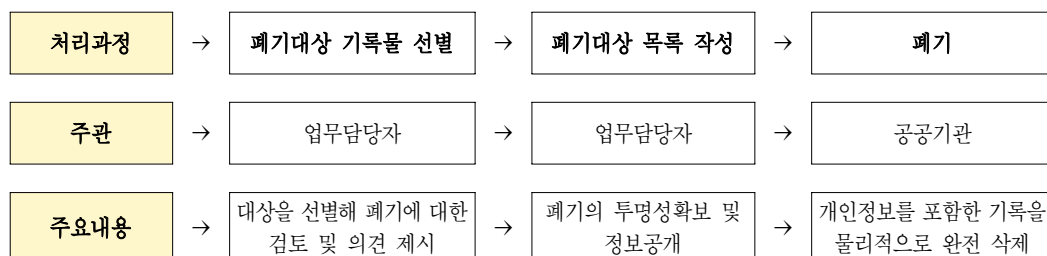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되는 전자출입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하도록 한다. 네이버 등 QR 발급회사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암호화된 QR 및 출입기록 또한 각 기관의 정보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해당 정보의 자동파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장이나 관련 장비가 보유되지 않은 업체와 같은 민간영역에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 요건과 수집, 이관 등의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을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파기 및 폐기 절차에 관련해서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인 사업장이나 관련 장비가 보유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관련 기록물을 수거, 공동 폐기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정사업본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4주의 보유기간이 지난 기록물을 주기적으로 수거해 지정 폐기업체로 송부하여 완전한 폐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6. 결 론

본 연구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중앙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표준매뉴얼에 기반하여 재난 위기 단계별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그림 8>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폐기절차 제안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분석하여 현재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이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재난 위기 단계에 따라 정부의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기록을 수집해야 할 범위가 결정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지정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에 관련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뉴스미디어에 나타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슈를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과 뉴스미디어 기반 이슈 분석을 통해 도출한 기록관리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주요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명확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집과 관련된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위치정보를 무제한 수집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영역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까지 수집근거가 명확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제한을 두는 등의 지침이 필요하다.

둘째, 관리적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암호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데이터 보호 시스템 및 도구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익적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후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에 대한 구체적인 선별 요건과 수집, 이관 등의 정책이 확립되지 않은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의 적절한 파기 및 폐기 절차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폐기지침 및 폐기 등록부 마련과 폐기 대행 체제 수립을 통한 완전한 폐기까지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라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공유가 불가피한 점과 정보주체의 동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과정에서 데이터 최소화와 보안책임 등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관에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건보 (2020). 감염병 위기 대응과 정보인권. 한국비교공법학회, 21(3), 3-32.
<https://doi.org/10.31779/plj.21.3.202008.001>
- 김현정 (2017). 재난기록의 웹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 OASIS 재난아카이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27-56.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027>

- 박태연, 오효정 (2020). 미디어 이슈를 통해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251-279. <https://dx.doi.org/10.16981/kliss.51.3.202009.251>
- 설문원 (2013).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31-2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231>
- 송가영 (2020). 감염병환자 개인위치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위험성 증대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범죄수사학연구, 6(1), 5-31. <http://dx.doi.org/10.46225/CIS.2020.06.6.1.5>
- 신영진 (201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영향평가항목의 도출 과정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6(3), 87-111. <http://dx.doi.org/10.22896/karis.2013.16.3.004>
- 오주현, 강정환 (2016).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정책연구, 23(1): 95-123.
- 이근옥 (2020).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조화: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145-176. <http://dx.doi.org/10.46407/kjci.2020.10.103.145>
- 이정념 (2020).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의의와 적용상 한계. 저스티스, 179, 242-270. <http://dx.doi.org/10.29305/tj.2020.08.179.242>
- 정종구, 손정구 (2020). 코로나19 동선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70, 103-131. <http://dx.doi.org/10.17248/knulaw..70.202007.103>
- 정지혜, 오효정 (2020). 뉴미디어에 나타난 코로나19 관련 기록관리 이슈 분석. 제12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
- 정태중 (20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20(3), 289-316.
- 조동원 (2012). 개인정보 해킹·유출의 정보문화: 개인정보의 가치 생산과 이용자노동을 중심으로. 문화연구, 1(1), 84-116.
- 조성은 (2020). 감염병 대응에서 개인정보 처리 이슈와 과제. KISDI Premium Report, 20-06.
- 한희정, 박태연, 오효정, 김용 (2017). 재난안전정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온라인 기록정보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187-213. <http://dx.doi.org/10.16981/kliss.48.2.201706.187>
- 황윤희, 유진호 (2016). 개인정보유출 사고의 분포 추정에 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3), 799-808. <http://dx.doi.org/10.13089/JKIISC.2016.26.3.799>
- 황필규 (2016). 감염병 격리와 인권.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19-60.

[관련법령 및 매뉴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기록원 (2020). 기록물 관리지침(공통매뉴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외 (2016).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19).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Privacy (2020). 10 privacy risks and 10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to watch in the next decade.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Cho, Seongeun (2020). Issues and task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gainst infectious disease. KISDI Premium Report, 20-06.

Chung, Tae-Jong (2020). Contents and legislative tasks of the 「infectious c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Law Review, 20(3), 289-316.

Han, Hui-Jeong, Park, Tae-Yeon, Oh, Hyo-Jung, & Kim, Yong (2017). A study on improvement and analysis of records management status for disaster safety archives in online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187-213.
<http://dx.doi.org/10.16981/kliss.48.2.201706.187>

Hwang, Pil-gyu (2016). Infectious disease isolation and human rights. Symposium on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Deten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rom the Aspect of Human Rights, 19-60.

Hwang, Yoon-hee, & Yoo, Jinho (2016). A study on the distribution estimation of personal data leak incidents.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26(3), 799-808. <http://dx.doi.org/10.13089/JKIISC.2016.26.3.799>

Jeong, Jihye, & Oh, Hyo-Jung (2020). The analysis of the COVID-19 related records management issues on news media. Presentations at the 12th National Recorder Competition.

Jeong, Jonggu, & Son, Junggoo (2020). Legal analysis of COVID-19 disclosure. Law Journal, 70, 103-131. <http://dx.doi.org/10.17248/knulaw..70.202007.103>

Jo, Dongwon (2012). Hacking and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information culture based on its value production and user labour. Cultural Studies, 1(1), 84-116.

Kim, Hyunjung (2017). A study on the web archiving of disaster records: Focusing on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OASIS disaster arch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 Records Management, 17(2), 27-56.
<https://doi.org/10.14404/JKSARM.2017.17.2.027>
- Kwon, Geon-Bo (2020). Preventive measures against infectious disease and information human rights. Public Law Journal, 21(3), 3-32. <https://doi.org/10.31779/plj.21.3.202008.001>
- Lee, Geun Oak (2020). The legal harmony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ublic interest under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Focusing on privacy infringement under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103, 145-176. <http://dx.doi.org/10.46407/kjci.2020.10.103.145>
- Lee, Jungnyum (2020). The meaning of the revis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limitations for its application. The Justice, 179, 242-270.
<http://dx.doi.org/10.29305/tj.2020.08.179.242>
- Oh, Joohyun, & Kang, Jeong-han (2016).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from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23(1), 95-123.
- Park, Tae-Yeon, & Oh, Hyo-Jung (2020). A study on library service in the post-COVID era through issues on medi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251-279. <https://dx.doi.org/10.16981/kliss.51.3.202009.251>
- Seol, Moon-won (2013). A study on problems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based on the value of 'business transaction' and application of a multi-appraisal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3(3), 231-254.
<https://doi.org/10.14404/JKSARM.2013.13.3.231>
- Shin, Young-Jin (2013). A study on introducing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in public agency: Focused on the progress to select factors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6(3), 87-111.
<http://dx.doi.org/10.22896/karis.2013.16.3.004>
- Song, Gayoung (2020). A study on the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increased risk of infringement of right to location-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for patients with infectious diseases. Criminal Investigation Studies, 6(1), 5-31. <http://dx.doi.org/10.46225/CIS.2020.06.6.1.5>

[Related Law and Manual]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9). 「Infectious Disease Disaster」 Risk Management Standard Manual.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20).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records(Common manual).
Daejeon: National Archives.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6). The guide for personal information non-
identification a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